

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의 견 서

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미래공간기획관 김용학입니다.

이효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70번
「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이 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
조례」에 따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‘도시건축전시관’의
이용료 면제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여 본인에 한해 무료로
이용가능하도록 그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.

도시건축전시관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무료로 이용하는
것이 원칙이나, ‘특정 전시 및 공연, 행사’의 경우
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에게
이용료 면제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
이번 개정조례안은 면제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여 임산부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,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취지로 의원발의 안에 적극 동의합니다.

감사합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이용료) ① ~ ③ (생략)	제8조(이용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0. (생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11.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 본인</u>
<u>11.</u> (생략)	<u>12.</u> (현행 제11호와 같음)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